

뉴욕주 노동법에 따른 귀하의 권리를 알고 있다면 직장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명심해야 할 몇 가지 기본 사실과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누구에게나 직무가 무엇이든 근로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최소한의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재택 간병인에 대한 예외는 있지만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 추가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주 56시간 이상 근무하는 농가 근로자는 이제 추가 작업 시간에 대해 정규 임금의 1.5배 요율로 추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뉴욕주의 최저 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ol.ny.gov/minimum-wage를 방문하십시오.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법규는 귀하가 서류 미비자이거나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시급. 일당 또는 주급
- 현금 또는 수표
- 초과 수당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 더 많은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청구 제기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전화 연락처는 888-469-7365입니다.

산재 보상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직장에서 부상을 입으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800-580-6665**번으로 전화를 걸어 부상 근로자 변호인에게 연락하십시오.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청구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적어 두십시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직원 성명(이름, 성 및 연락처 정보)
- 근무한 장소의 주소 및/또는 전화번호
- 차량의 소속 주 및 번호판 번호(일자리 때문에 적임자 선택 시)
- 연락처 정보(이름 및 전화번호)
- 근무를 시작하고 중단한 시간(식사 시간 포함)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하기로 동의한 금액

허가증 또는 면허증에 기재된 회사 이름을 적어 두거나 명함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고용주는 귀하가 자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노동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카메라폰이 있으면 직장과 상사를 포함한 동료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고 신호

노동법 위반에 대해 경고할 수 있는 위험 신호가 많이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임금 절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시간 기록을 받지 못했을 경우(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것과 무관)
- 작업에 필요한 장비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경우
- 최소 6시간 연속으로 근무하고 최소 30분의 식사 시간을 갖지 못했을 경우

고용주와 업무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노동부에서 청구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청구를 하고 싶다면, 근무한 주 지역에 소재한 노동부에 전화하십시오.

여러 노동부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New York: 888-469-7365 New Jersey: 609-292-2305 Connecticut: 860-263-6790 Pennsylvania: 717-787-4671 Massachusetts: 617-626-6975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이민자정책사무분과(Division of Immigrant Policies and Affairs)

877-466-9757